

제 6 장 : 재산상 손해 사례

사 례 49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강화마루가 층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481 정정청구

신 청 인 : ○○ ○○○○(주)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7.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급증하는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방송에서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강화마루가 층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제조한 강화마루는 다른 바닥재보다 소음저감 효과가 높다는 여러 관련 실험 결과가 있으므로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강화마루의 효과를 광고하는 PR보도를 함과 동시에 KBS미디어 및 피신청인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해 외부에 제공하는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모두 삭제하여,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중 문제된 ‘강화바닥재(또는 강화마루)’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재편집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KBS-2TV** :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급증하는 층간소음 문제』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일자 20:50)

- **내 용** : (전략)

▷ 내레이션 : 넘버원에서 소음 관련한 속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끄러운 음악이 있는 곳이라면 한번쯤 설치해본 계란판!! 정말 계란판 효과 있을까요? 정답은, 효과 없음!

자, 두 번째 방법은 강화바닥재! 딱딱한 바닥재가 위층의 소음을 차단해 줄 거라 생각
되지만~ 효과 없습니다~!!



<소음 '차단'의 효과없음을 고지>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에서는 무용지물~ 비싼 시공비용을 들여, 바닥재를 하는 것 대신 저렴한 매트나 슬리퍼를 사용하는 것이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 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 목 : 강화바닥재 ‘층간소음 효과’ 관련 정정보도문

가.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2013년 4월 1일자(377회차)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에서 “층간소음을 해결해 주는 도구는 두꺼운 슬리퍼”편에서 강화바닥재나 강화마루가 층간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다고 방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체 등에 확인한 결과 강화마루는 다른 바닥재에 비하여 바닥 소음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층간 소음 차단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해당업체 등에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제작진은 정중히 사과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내용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방송대본을 2013년 5월 27일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에 방송한다.
2. 피신청인은 2013년 5월 16일까지 KBS인터넷홈페이지 및 피신청인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해 외부에 제공하는 이 사건 조정대상방송을 모두 삭제하여,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단, 이 사건 조정대상방송 중 ‘강화바닥재(또는 강화마루)’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재편집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단, 공식 공급계약에 의해 콘텐츠를 공급하였으나 삭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5. 09.

〈별 지〉

〈 위기탈출 넘버원 〉 제 384회

- MC : 김○○ / 장○○ / 김△△

#1. 오프닝

[MC 위치]

김○○ // 장○○ // 김△△

김○○ : 몸도 튼튼! 안전도 튼튼! 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탈출~

다같이 : (오른쪽 엄지손가락 내밀며) 넘버~원!

- 다 같이 환호 & 박수

김○○ : ○○씨, 어젯밤에 잠 잘 못 잤죠?

장○○ : (놀라) 어떻게 알았어요?

김△△ : 에이~ 남자친구랑 밤새.... (놀리듯) 전화했구나!!!

장○○ : (실망) 그랬으면 기분이라도 좋죠. 실은... 밤새!!!

김△△ : 밤새!!

장○○ : 층간소음 때문에 한 숨도 못 잤어요.... 휴우~

김△△ : 그럴 때는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두꺼운 슬리퍼를 신으면 좋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윗집에 선물하세요!!

장○○ : 아! 그렇구나~ 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김○○ : 있죠!! 집에 바닥재 선택하실 때 <강화마루>도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 : (좋아하며) 어머!! 나도 신혼집 고를 때 꼭!! 참고 해야겠다!! △△씨는요?

김△△ : 이미 깔았자~ ^^ 김○○씨는요?

김○○ : (한숨) 바닥재만 잘 고르면 뭐합니까? 아직 신부감을 못 골랐는데... 제가 노총각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날을 위해!! 위기탈출 넘버원!! 시작해볼까요??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KBS-2TV** :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강화마루도 층간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5월 27일자 20:50)
- **내 용** : <조정성립사항의 별지 참조>

사 례 50

유흥업소 여종업원 살인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간판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서울조정1367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이채널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3. 09. 10.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살인사건과 관련한 방송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업소와는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간판을 방영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흥업소 자료화면으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옆 간판과 정면 간판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되어 손님들로부터 신청인 가게에 종사하던 여종업원이 살인사건의 피해자인가 하는 질문을 받는 등 부득이 가게 간판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3,5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도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e 채널 : 대한민국 사건파일 No.5 프로그램 『11화 - 진실게임, 죽은 자는 알고 있다』
제하의 보도 (2013년 8월 23일자 23:00)
- 내 용 : ▷ 리포트 : 밝혀진 사망자의 신원은 30살의 여성 곽 모씨.



<신청인 업소 네온 사인 간판>

▷ 리포트 :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그녀는 가족과도 연락이 끊겨 실종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